

4 월의 안테나

월간양계

노영한

(本誌 편집국장)

협회가 양계인의 구심점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7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1962년 당시 가금협회가 창립되어 양계강습회를 시작하면서 부터 근대양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국민경제통계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80년간 경제성장의 20%가 자본성장에 의한 것이고 30%정도가 노동력 성장에 의한 것이며 40~60%가 기술적인 성장에 의한 것으로 두뇌력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지난 62년 부터 70년대 중반기 까지의 한

국 가금협회와 대한 양계협회가 주도한 우리 양계인의 두뇌력 성장을 위한 각종 양계강습회와 월간양계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그후 양계인의 해외 시찰과 외국인의 국내 교류 기타 문헌등을 통한 생산과 경영기술의 발전이 오늘날의 양계산업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73년 정부방침에 따라 당시 모든 양계단체가 통합되면서 기구가 방대하여지게 되었고 새로운 조직은 자연 과거와 같이 매월 전 회원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고대 회랍식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의원을 통한 간접참여의 길로 바뀌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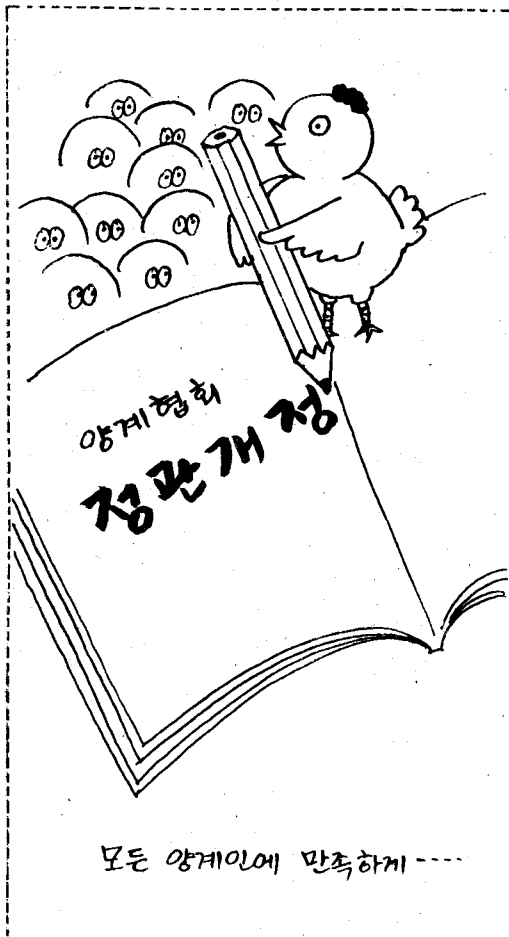
산업의 발달은 체란, 부로일러, 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므로써 업종간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이러한 복잡화된 회원 구조와 대의제를 통한 간접 참여방법 등이 협회가 양계인의 구심점이 되기 위하여 개선을 하기에 이르렀다.

협회의 정관개정 작업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협회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 위한 것이며 결코 퇴보나 무기력화가 되는것이어서는 안되며 그러길 바라는 양계인은 한명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제 협회의 역사는 18년으로 힘이 넘치는 청년기에 이르러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이 2백년의 짧은 역사속에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배경이 다른 잡다한 사회구성원을 가지고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라는 질서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세계제일



의 안정부국을 이루는데 성공하였듯이 이번 협회의 정관 개정도 가능하면 모든 양계인이, 가장 많은 양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양계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양계인의 구심점이 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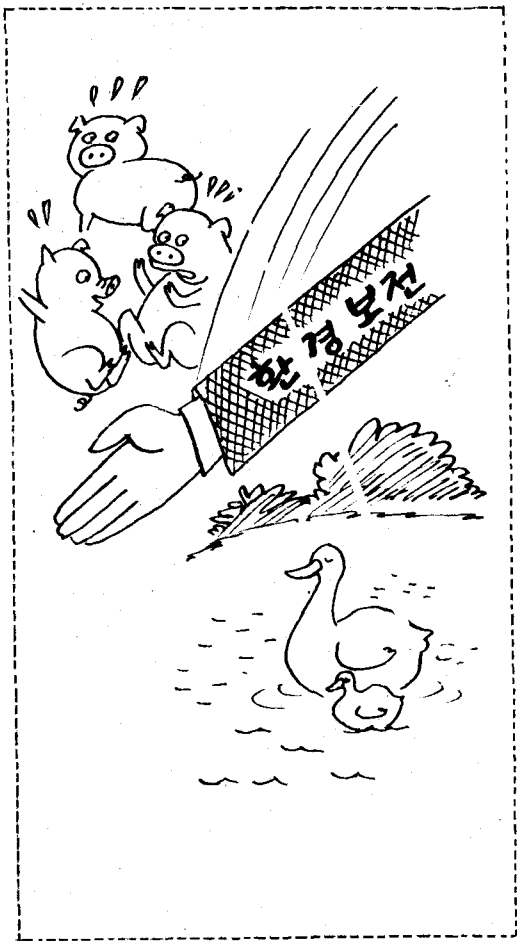
채란 부로일러 부화등이 그 성격이 다르다고하나 미국의 사회구성원에 비하면 너무도 단순하며 지난 18년간의 경험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다. 잎과 줄기가 무성한 나무는 보기는 좋으나 그 뿌리가 약하면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듯이 이번의 정관개정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보다 낙후된것으로 알고 있던 태국등이 양계 산업을 수출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양계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끄는 주도적인 산업이 되느냐? 또는 막다른 골목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담보상태로 전략하느냐의 기로에서 양계인이 해야할 일은 너무도 많다. 나무는 물과 양분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것이다.

환경보호와 축산공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도 금년에 환경청을 발족시켜 공해문제를 전담토록 하였다.



환경청은 설립후 첫사업으로 80여개 축산 단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몇개의 농장에서 가축 분뇨가 흘러 이것이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상류로 유입되었다해서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축산 공해문제는 사육규모가 대규모화 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근주민과 마찰도 있었고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될것을 예견하여 왔다.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고 이를 자급하기 위하여는 앞으로는 공해방지 시설도 함께 설계 하여야 될것이다.

환경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축산진흥회 등에서도 공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금까지 생산 유통분야에 한하던 자금지원을 공해방지시설 까지에도 확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해방지 시설이 원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대규모 농장은 자체자금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농장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자체능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성환의 연암 축산전문대학에서 성공한 돈분을 이용한 메탄가스 발생 이용 시험의 성공은 에너지 문제와 공해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였다는 뜻에서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비교적 경비가 적게드는 발효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겠고 앞으로 계속 이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투자되어야 되겠고 축산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오물청소법과 환경법

오염청소법

제 7 조 (오물발생의 방지를 위한 가축사육의 제한) 시장, 군수는 생활환경의 청결 및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오물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보전법

제 7 조 (특별대책지역)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인구및 산업의 집중으로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대하여 당해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지역내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보건사회부장관은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7 조 (투기 또는 회손등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물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동물의 사체, 분뇨, 塵尿 또는 汚泥등을 버리는 행위.
3. 자연환경훼손 또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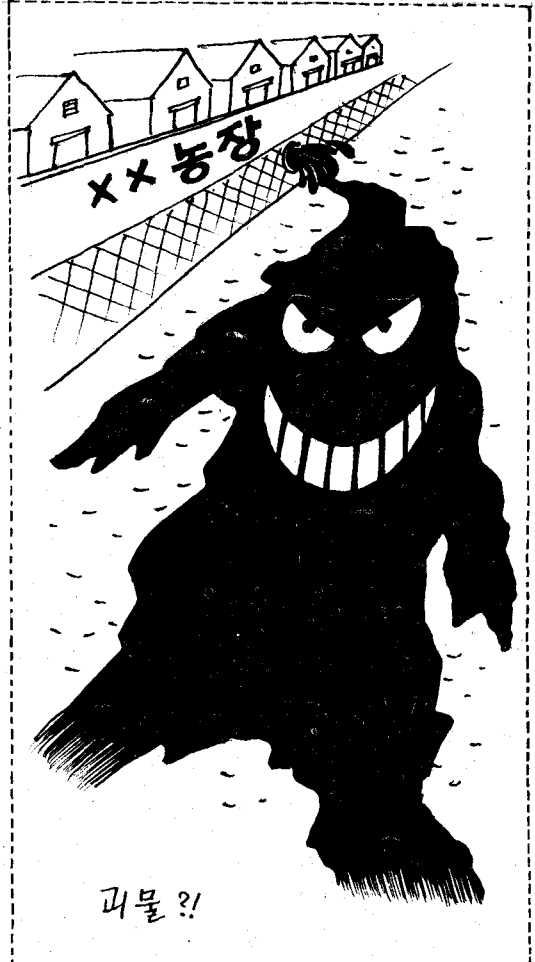
제 41 조 (농경지의 오염방지) 시·도지사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에 있어서 특정 유해물질에 의한 농경지(초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경지에 유입하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거나 복토, 삭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2 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① 시·도지사는 특별 대책지역내에 있어서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오염지역에 대한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재배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68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6 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 3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5 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게 된 때.
2. 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게 된 때.
3.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등의 재배를 제한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대책 지역내의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

②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주무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용수의 수질기준) ①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의 수질기준 설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동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정유해물질.

③ 시장·도지사는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는 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복토, 삭토등의 조치) 시장·도지사는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토, 삭토등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또는 재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 (농수산물의 재배제한) ① 법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등의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 의 오염기준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법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재배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상 방법, 기간 및 구역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사회부장관은 제 2 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내용에 관하여 미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3]

농수산물 재배물 제한할수있는 오염기준

구 분	유 해 물 질 종 류	오 염 기 준
토 양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동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생산된 현미중의 카드뮴 함량이 1ppm 이상 토양(밭에한한다) 중의 동함량이 125ppm 이상 토양(밭에한한다)중의 비소함량이 15ppm 이상
수 역	1. 수 은 2. 동 3. 연 4. 6 가크롬 5. 시안화합물	0.005 ppm 이상 0.01 ppm 이상 0.1 ppm 이상 0.05 ppm 이상 0.1 ppm 이상

[별표 1]

배 출 시 설

가.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배출시설

(11) 동물계 사료의 제조시설

다. 폐수, 배출시설

(16) 동물계 사료 제조시설

- 15. 아연 및 그화합물
- 16. 동 및 그화합물
- 17. 카드뮴 및 그화합물
- 18. 연 및 그화합물
- 19. 용해성 망간
- 20. 노말핵산추출물질
- 21. 유기인
- 22. 수은, 알킬수은 및 기타 수은화합물
- 23. 폴리크로리베이트드 비페닐 (P. C. B)
- 24. 먼 지
- 25. 점 령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3조(오염물질) 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 14조(개선기간등) ① 시장·도지사는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때는 그 개선등의 조치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기간내에 그 개선등의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5조(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분 노	40 ppm이하	70ppm 이하
하 수	30 ppm이하	70ppm 이하

[별표 1]

오 염 물 질

- 1. 황산화물
- 2. 질소산화물
- 3. 암모니아
- 4. 일산화탄소 및 이황화탄소
- 5. 불소 및 그화합물
- 6. 염소 및 그화합물
- 7. 취소 및 그화합물
- 8. 비소 및 그화합물
- 9. 황화수소
- 10. 시안화합물
- 11. 벤젠
- 12. 페놀 및 그화합물
- 13. 포름알데히드
- 14. 크롬 및 그화합물

[별표 2]

배출시설의 세부규격

가. 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시설

(11) 단백질 사료의 제조시설

나.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1)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

(마) 동력 20HP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폐수배출시설

(6) 음식료품 제조가공시설

(바) 실내면적 합계 20m³ 이상의 도축시설

(16) 동물계 사료제조시설

(가) 용적합계 2m³이상(분수형은 용수합계 1m²/시간이상)의 원료 또는 제품의 세척시설

(나) 용적합계 3m³이상의 농축시설

(다) 동력합계 10HP이상의 압착시설

(라) 습식 탈취시설

닭고기 수요량
축소조정

농수산부는 금년도 육류 수요량을 79년대 비 5.8% 증가한 454천 M/T으로 추정 발표

하였는데 국민일인당 소비량은 지난해와 똑같이 11.8kg이다.

특히 쇠고기는 부족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남아돌아 작년에 큰 문제가 되어 금년에는 쇠고기 가격을 자유화하여(연동제) 쇠고기 수요를 줄이고 돼지고기 닭고기 수요를 대폭확대할 것으로 발표되어 일반 양축가가 큰 기대를 하였으나 닭고기의 경우는 작년보다 총수요에서 4%가 감소한 86천 M/T이며 1인당 소비도 2.4kg에서 2.2kg로 축소 추정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12%가 증가한 252천 M/T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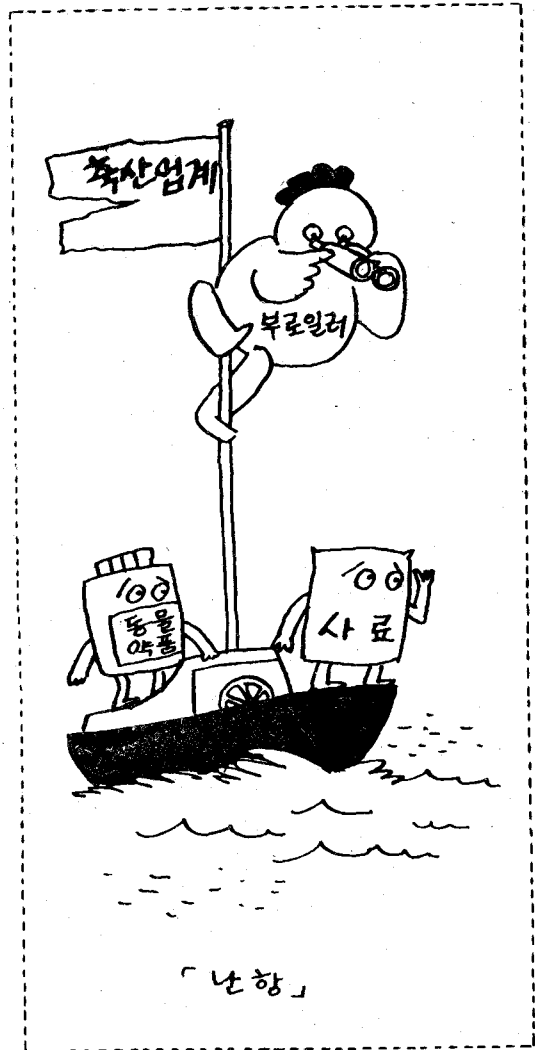
1980년도 축산물수요 추정

구분	단위	1980 (A)	1979 (B)	A/B (%)
우유	천M/T (kg)	415 (10.8)	373 (9.9)	110.7
육류	천M/T (kg)	454 (11.8)	429 (11.8)	105.8
쇠고기	"	116 (3.0)	114 (3.0)	101.7
돼지고기	"	252 (6.6)	225 (5.9)	112.0
닭고기	"	86 (2.2)	90 (2.4)	96.0
계란	백만개 (개)	4.485 (118)	4.231 (112)	106.0

※ ()는 1인당 수요량.

모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쇠고기 가격만이 근당 3,500원 선으로 유지되면 이에 따라 닭고기 소비가 약 20%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닭고기 생산비의 상승은 이러한 기대를 상실시키었다. 더욱이 3월 27일부터 돼지고기 소매 가격이 근당 1,200원에서 1,100원으로 8.3%인하 조정됨으로써 닭고기 소비는 더욱 감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들어 닭고기값이 돼지고기 지육가격을 웃돌고 있어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과거 부로이러 1,000수를 한번에 사



가던 것이 여러번에 출하하게 됨으로써 부로일러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축산업계의 경기를 주도하던 부로이러 산업이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부회사료 동물약품 양계기계기구등 모든 관련 산업도 따라서 진통을 겪고있다.

축산업계의 경기회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로이러 산업의 재검토와 발전책이 시급하지 않을수 없다.